

KSSISO 23601을 활용하여

피난 계획도

쉽게 만들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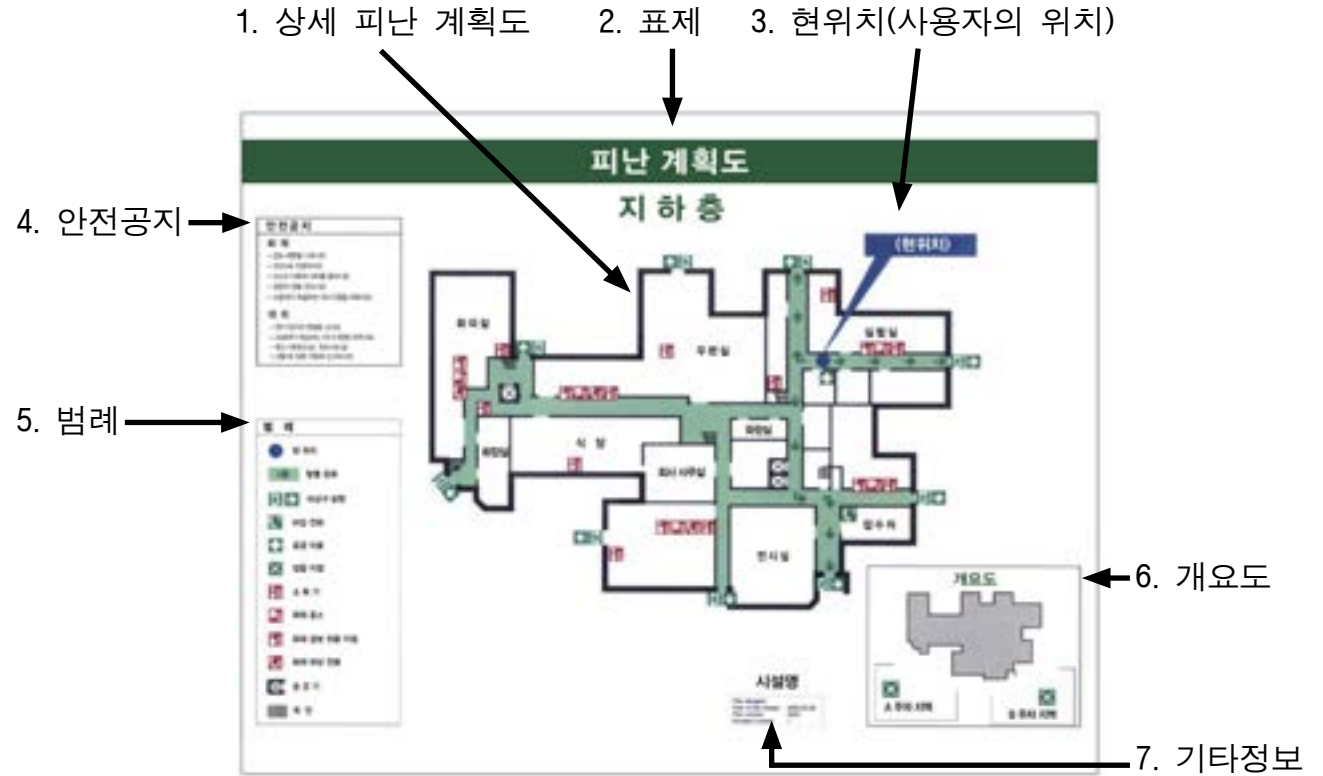


KSSISO 23601:2014, A.2 방향 화살표가 있는 피난 계획도의 사례

참조표준: KSSISO 23601:2014,
안전 식별—피난 및 대피 계획 표지
2014. 9. .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문화서비스표준과
ISO TC 145 그래픽심볼 기술위원회
www.kats.go.kr

피난 계획도 (ESCAPE PLAN)



피난 계획도 주요 명칭과 요소

- 상세 피난 계획도**
 - 비상구, 피난경로
 - 사용자의 위치 (현위치)
 - 계단·승강기 위치, 장애인용 특정 설비
 - 화재진압장비
 - 비상구조장비의 위치와모양
- 표제**
 - 반드시 표시
 - 영문 (ESCAPE PLAN) 과 같이 표기 가능
- 현위치(사용자의 위치)**
 - 파란색으로 표시
- 안전공지**
 - 화재, 대피 시의 행동요령
- 범례**
 - 안전표지, 그래픽심볼, 색의 의미
- 개요도**
 - 대피지점
 - 해당 시설의 전체 모양, 상세계획도의 구역
 - 주변지역(차도, 주차장, 기타건물 등) 표시
- 기타정보**
 - 계획도설계자, 설계날짜, 수정번호
 - 시설물명칭, 층별안내

피난 계획도 개요 (KSSISO 23601)

[] 피난 계획도

시설내 사용자의 피난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대피, 구조 및 최초 개입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 계획도

[] 디자인 요구사항

-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
- 적절한 색을 사용
- 축척을 사용
 - 대규모 시설에는 1 : 250
 - 중소 규모의 시설에는 1 : 100
 - 개인 사무실에는 1 : 350
- 표시되는 영역을 일치되게 설명
-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
- 적절한 조명시설
- 바탕색은 흰색
- 최소 크기 297 mm x 420 mm (A3)
- 지속적으로 개정
- 왼쪽 방향이 관찰자의 왼쪽이 되도록
- 소방 설비 등 심볼은 KSSISO 7010준수
- 범례를 표기
- 표제 "피난 계획도"를 표시
- 대피지점의 위치를 표시

[] 피난 계획도 요소의 크기

- 가독성d최대화할 수 있는 글자꼴
- 표제의 높이는 계획도의 크기 중 작은 치수의 7 %이상, 표제 문자는 표제 높이의 60 %이상
- 안전 표지의 높이는 7 mm이상
- (선 굵기) 벽은 1.6 mm이상, 계단·선반·창문은 0.15 mm이상

[] 자세한 내용은 KSSISO 23601을 참조하세요

피난 계획도 사례 (KSSISO 23601)

[] 방향화살표가 없는 피난 계획도 (A.1)



[] 한 층의 일부를 표시한 피난 계획도 (A.3)



[] 계단이 있는 층의 피난 계획도 (A.4)



피난 계획도 (우리나라 관련 법규)

[] 관련법규
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 - 법률 제11690호, 시행 2013.3.23.

제12조(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)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·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,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,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,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
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 - 대통령령 제25050호, 시행 2014.1.1.

별표 6. 과태료의 부과기준

2. 개별기준
(위반행위)

마.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……
(근거법조문)

법 제25조제1항제1호
(과태료 금액)

- 1회: 500,000원
- 2회: 1,000,000원
- 3회 이상: 2,000,000원
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 - 안전행정부령 제3호, 시행 2013.3.23.

제12조(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)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,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,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. KATS